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05 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신장식・이해민・차규근

정춘생 · 김선민 · 백선희

서왕진 · 김준형 · 황운하

박은정・강경숙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, 일 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. 대통령경호처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대 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. 대통령 경호조 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 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.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, 1963년 5·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.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.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 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. 한편,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 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.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 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 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 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 하고자 함(안 제16조 삭제, 제34조제5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3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5항 중 "치안에 관한 사무를"을 "치안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대통령경호 처"를 인용한 경우에는 "경찰청"을, "대통령경호처장"을 인용한 경 우는 "경찰청장"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대통령경호처) ① 대통령	<u>&lt;삭 제&gt;</u>
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	
대통령경호처를 둔다.	
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	
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	
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・직무	
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	
따로 법률로 정한다.	
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④ (생	제34조(행정안전부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⑤ <u>치안에 관한 사무를</u> 관장하	⑤ 치안 및 대통령 등의 경호
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	<u>에 관한 사무를</u>
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	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